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미래자동차산업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2명(4급 1명, 5급 1명)을 감축하고, 산업통상자원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「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3. 11. 1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행정안전부와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10. 17. ~ 10. 2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5항에 제10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제18호 및 제19호로 한다.

10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
11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
12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기술 개발·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
13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·분석
14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15.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
16.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
17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

제41조의6을 삭제한다.

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6]

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39조제2항 관련)

1. 원전전략기획관(존속기한: 2024년 12월 31일)

총계	1
----	---

일반직 계	1
-------	---

고위공무원단	1
--------	---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산업정책실) ① ~ ⑭ (생략)	제8조(산업정책실) ① ~ ⑭ (현행과 같음)
⑮ 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	⑮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10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
<신설>	11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·시행
<신설>	12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기술 개발·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
<신설>	13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·분석
<신설>	14.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부품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
<신설>	15.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
<신설>	16.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

<신설>	제 대응
19. · 20. (생략)	17.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
⑯ ~ ㉓ (생략)	18. · 19. (현행 제19호 및 제20호와 같음)
제41조의6(미래자동차산업과) ①	⑯ ~ ㉓ (현행과 같음)
미래자동차산업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	<삭제>
② 미래자동차산업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.	

한시조직 신·구정원대비표

[별표 6]

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	(제39조제 2항 및 제 41조의6제 2항 관련)	(제39조 제2항 관 련)	
·	·	·	
·	·	·	
2. 미래자 동차산업 과(준속기 한: 2023 년 10월 3 1일)	2. 미래자 동차산업 과(준속기 한: 2023 년 10월 3 1일)	<삭 제>	
총계	2	<삭 제>	△2
일반직 계	2	<삭 제>	△2
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	1	<삭 제>	△1
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 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 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 관·보건사무관·사서사무관· 기상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 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 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 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 사무관·간호사무관·항공사무 관·방재안전사무관·부감사관 ·공업연구원·학예연구원·편 사연구원·농업연구원·임업연 구관·해양수산연구원·기상연 구관·보건연구원·환경연구원 ·시설연구원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	1	<삭 제>	△1
--	---	-------	----